

『실버바』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실버바를 매입/매도하는 고객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실버바를 판매/매입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은행"이라 약칭합니다)간에 이루어지는 실버바의 매매거래에 적용합니다.

제2조 실버바 매매의 개요

- ① 은행은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실버바를 판매하거나 (이하 "판매대행 거래"라 약칭합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실버바를 고객으로부터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매입하는 업무(이하 "매입대행 거래"라 약칭합니다)를 수행합니다.
- ② 실버바 판매대행/매입대행 거래에 따른 권리, 의무는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과 고객에 귀속됩니다.

제3조 대상고객

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개인고객(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불가)에 한하여 실버바 판매대행 거래와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제4조 거래장소

고객은 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에서 실버바 매매거래를 합니다. 추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제5조 실버바 종류

- ① 이 약관상의 실버바란 은을 바(Bar) 형태로 주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물형태의 은으로서, 한국금거래소쓰리엠에서 제조하고, 순도 99.99% 및 질량을 보증하는 실버바를 말합니다.
- ② 실버바 판매단위는 1kg 입니다. 단, 판매단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보유한 재고보유량에 한하여 대고객 판매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이 약관에 따라 판매대행한 실버바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실버바 가격

① 기준가격의 결정

1. 기준가격은 국제은가격 및 환율을 이용하여 은 1gram당 원화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이 거래시점에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기준가격

$$\text{기준가격 [원/g]} = \text{국제은가격 [$/T.oz]} \div 31.1034768 \text{ [g/T.oz]} \times \text{환율 [원/$]}$$

2. 제1호에서 거래시점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매도(매입)신청서의 내용을 은행 전산단말기에 입력 및 실행 완료하여 실버바의 판매(매입)가격이 산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3. 제1호에서 “국제은가격”이란 거래시점에 은행이 고시하는 1트로이온스 당 미달러화 표시가격을 말합니다.
4. 제1호에서 “환율”이란 은행이 고시하고,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실시간 거래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기준 환율을 뜻합니다.

② 판매(매입) 가격결정 방법

1. 은행과 고객사이에 이루어지는 실버바 판매(매입)가격은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begin{aligned} \text{실버바 판매가격(원)}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실버바중량} \times (1 + \text{판매 마진율}) \\ \text{실버바 매입가격(원)} &= \text{기준가격} \times \text{실버바중량} \times (1 - \text{판매 마진율}) \end{aligned}$$

2. 제1호에서 규정된 “판매(매입)마진율”은 실버바 종류 및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1kg
판매마진율(고객매입시)	17%
매입마진율(고객매도시)	7%

- ③ 판매가격에 추가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7조 부가가치세 징수

- ① 고객이 실버바를 매입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부가가치세 산식

$$\text{부가가치세} = \text{판매가격 (고객의 매입가격)} \times 10\%$$

제8조 매매대금지급방법

-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입하는 경우, 고객은 제6조에 따라 정해진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7조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시점에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도하는 경우, 은행은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제6조에 따라 정해진 매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실버바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한 매입거절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실물의 인도 및 인수

-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입하는 경우, 은행이 보유한 수량이내의 판매분은 매매계약체결일에 즉시 교부하고, 은행이 보유하지 않은 수량에 대한 판매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 ②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실버바를 매도하는 경우, 고객은 매도신청서와 함께 실버바를 은행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버바의 인도장소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으로 합니다. 단 제4조에 의하여 매매거래 장소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따릅니다.

제10조 유의사항

- ① 실버바 판매(매입)가격은 국제은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제6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은 국제은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 고객이 상담시 조회한 가격과 실제 판매(매입)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실버바를 고객으로부터 매입대행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은행이 판매대행한 실버바임이 확인되고, 실버바의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이를 매입대행 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실버바, 실버바의 외형이 손상되거나 위·변조가 의심되는 실버바에 대하여는 매입대행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실버바 매매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 ⑥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이 해산, 폐업, 영업정지, 관련법령의 개폐 등으로 실버바 판매/매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은행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은행은 실버바 판매대행/매입대행 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⑦ 제6항에서 정한 거래종료 사유 중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은행이 실버바 판

매대행/매입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는 업무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한 달간 각호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 ⑧ 제6항에서 정한 거래종료 사유 중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의 해산, 폐업, 영업정지, 관련 법령의 개폐 등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실버바 판매대행/매입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는 은행이 종료사유를 인지하는 즉시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게 해당사실을 공지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또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게시합니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예금자 보호

실버바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사항

- ① 은행은 은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전쟁, 천재지변, 전산장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실버바 판매대행/매입대행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은행은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제10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의 사유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실버바를 매입대행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고객이 실버바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실버바의 물품 상 하자에 대하여는 실버바의 보관, 관리 등에 은행의 고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변경내용 고지

- ① 고객이 최초 거래 시 은행에 제출한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객이 이러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변경 내용이 제1항의 사유로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약관변경내용이 고객에게 개별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은행사이의 거래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5조 분쟁조정

- ① 고객은 실버바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기 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사용 중인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